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312호

나. 발 의 자 : 이민옥 의원(찬성자 13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10월 13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지원 해오고 있음.
- 그러나 강소기업의 선정 시에만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지원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을 뿐, 선정 취소 시에는 그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이는 강소기업에 관심을 갖고 취업 또는 사업 연계 등을 도모하는 청년 및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소기업 선정 기본 취지에 반하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선정 취소 시에도 그 사유 및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강소기업 선정의 기본 취지를 더욱 강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강소기업의 선정 취소 시에도 그 사실과 사유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 제3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강소기업 선정 취소시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강소기업에 관심을 가진 취업 희망자와 기업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됨.

나. 강소기업 현황 및 조문 검토(안 제14조제3항)

- 서울시는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서울형 강소기업¹⁾(이하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2만여 개를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성과, ▶기업우수성, ▶고용안정성 노력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되고 있음.

< 서울시 소재 주요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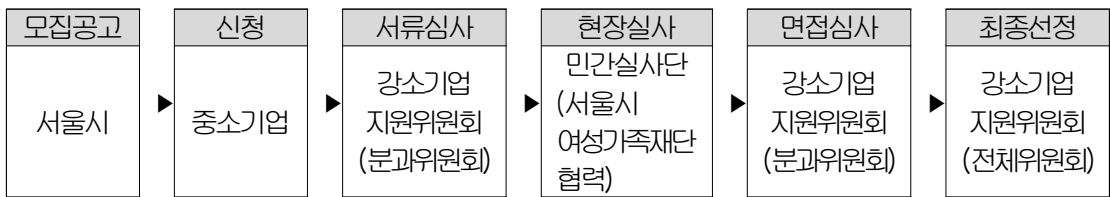
(’23.6월말 기준)

구 분	하이서울 브랜드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이노비즈 (기술혁신기업)	메인비즈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인증기관	서울시 (SBA)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부
기업수(개) (21,266)	1,004	391	1,539	3,779	4,336	10,217

1) 규모는 작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선정한 기업

- 서울시는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지원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서면심사, 현장실사, 관계자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올해(2023년) 새롭게 선정된 강소기업은 55개임(참고자료).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절차 >



- 그리고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근무환경개선금과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지원 혜택이 제공되며, 2016년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근무환경 개선금 173억 9,300만원(3,204명),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33억 2,600만원(233명)이 지원되었음(참고자료2).

< 연도별 지원 현황 >

(’22.12월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근무환경 개선금	인원	37	188	273	415	779	925	587	3,204
	금액	70	937	1,618	2,615	4,212	4,908	3,033	17,393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인원	-	-	2	28	64	80	59	233
	금액	-	-	4	348	940	1,085	949	3,326

※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지원(’16~’17) 사업은 ’18년부터 근무환경개선금 지원사업으로 전환,
’18년부터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지원 사업 시행

- 또한, 강소기업에 선정되었더라도 협약 최대기한(6년)이 만료되면 협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기업 의무사항 미이행, ▶노동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바, 사업 시행 후 현재 까지 총 399개의 기업이 선정 취소되었음.

<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 해지 조치 된 주요 사유별 현황 >

('23. 10월말 기준, 단위: 개)

인증취소 조치연도	합계	세부 사유								
		의무사항 미이행	점검, 재인증 미이행	협약 기한 (6년) 만료	타시도 이전	재인증 평가 탈락	협약 유지 미희망	합병, 파산, 폐업	노동 법령 위반	기 타
합 계	399	89	124	48	27	27	51	12	15	6
2017	1	-	-	-	-	-	1	-	-	-
2018	24	1	-	-	3	-	20	-	-	-
2020	32	-	-	-	9	-	20	3	-	-
2021	102	70	7	-	12	-	8	4	-	1
2022	129	12	48	48	1	13	1	1	3	2
2023	111	6	69		2	14	1	4	12	3

※재인증미이행은 재인증 여부에 대한 의사 표시와 서류제출이 모두 안 된 기업을 의미함.

-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재인증평가에서 점수가 70점에 미달한 기업, 최근 5년간 노동법령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기업, 그 외 기업 소재지나 요건 변경으로 인한 부적합 기업의 경우에도 인증이 취소됨.

< 인증 유지 및 취소 기준 >

[인증 유지]	[인증 취소]
<p>재인증평가 점수 70점 이상 획득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증가 실적(20점) · 중소기업 역량(매출액 등)(15점) · 고용안정성 및 적정임금(30점) · 복지,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35점) · 서울시 사업 참여 실적(최대 20점 가점) · 노동법령위반 신고(최대 20점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인증평가 점수 70점 미달 기업 - 최근 5년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동법령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기업 - 그 외 서울시 거주 청년 신규 정규직 미채용, 타시도 이전, 합병·폐업 등 부적합 기업

- 이와 같이 그동안 적지 않은 기업이 강소기업에서 선정 취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소기업 선정과 달리 취소 시에는 그 사유를 알리는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의 부재로 인해 그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되지 않았음.

- 따라서 선정시와 동일하게 20일간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취소사유를 게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강소기업에 관심을 갖고 취업이나 사업 연계를 도모하는 시민과 기업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음.
- 다만 노동법령 위반 등 기업의 평판을 저해하는 취소사유가 공개 될 경우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고 내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성찬	02-2180-8061

[참고자료1]

< 연도별 인증 현황 >

(’23. 10월말 기준)

선정연도	신청기업 수	선정기업 수	협약해지	인증기업 수
합계	2,327개	877개	399개	478개
2023년	202개	55개	-	55개
2022년	243개	51개	-	51개
2021년	243개	53개	10개	43개
2020년	415개	161개	66개	95개
2019년	222개	154개	54개	100개
2018년	541개	105개	57개	48개
2017년	297개	171개	85개	86개
2016년	164개	127개	127개	-

※2016년 선정기업 : ’22.12.31.자로 인증보유 최대기간(6년) 만료, ’23.1.1.자 협약 해지
※협약해지 기업의 수는 각 연도별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해지가 된 기업의 수를 의미함.

[참고자료2]

추진현황 및 실적

□ 그간의 추진현황

- (’ 16.5.)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 청년 채용 지원 및 일자리 질 개선계획
 - 고용지원금 지원 (청년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10백만원, 기업당 2명)
 - 강소기업 홍보, 채용행사 및 박람회 개최, 일자리 질 개선 컨설팅 지원
- (’ 18.5.) 청년채용 확대 및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계획 수립
 -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청년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15백만원, 기업당 3명)
 -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최대 23개월, 기업당 3명, 총 50명)
 -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강소기업 전용채용관 구축, 현장점검
- (’ 20.5.) 청년채용 확대 및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계획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확대 (기업당 4명, 재협약 시 2명 추가 지원, 최대 6명 지원)

- (' 21.3.) 청년채용 확대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개선계획
 - 양적 확대보다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위한 근무환경개선금 지원인원 축소(기업당 3명)
 - 근무환경개선금 사용 용도 다각화 (총 지원액 50% 이하로 시설개선비 사용)
 - 재인증 평가 강화 (기준점수 미달 시 협약 해지), 지원기한 설정 (최대 6년)
 - 일생활균형 컨설팅 사업 전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협력)

- (' 22.7.) 청년고용 안정성 확보 및 육아친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개선계획
 - 근무환경개선금 지급시기 조정 (2022년 신규 선정기업부터 12개월 만근 시 지원금 일괄 지급)
 - 신규선정 기준 개선 ('청년고용유지율' 및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비율' 매점 신설 등)
 - 재인증평가를 통한 재협약기간 단축(재협약기간 2년→1년으로 변경 매년 재인증평가지체 실시)

□ 추진실적

-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16 ~ ' 22년) : 선정 822개, 인증 582개
 - ※ 업종별 현황 : IT 등 정보통신업 272개(46.7%), 서비스업 179개(30.8%), 제조건설업 131개(22.5%)

[참고자료3]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활동성과 >

연번	성명(성별)	현직 및 주요경력	임기	비고
1	윤형호(남)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3.4.24.~ '25.4.23.	
2	공석기(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23.4.24.~ '25.4.23.	
3	문재철(남)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교수	'23.4.24.~ '25.4.23.	
4	박환수(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무국장	'23.4.24.~ '25.4.23.	
5	최용일(남)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부장	'23.4.24.~ '25.4.23.	
6	이선형(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23.4.24.~ '25.4.23.	
7	최은정(여)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신사업개발팀 과장	'23.4.24.~ '25.4.23.	
8	권준화(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벤처연구실 연구위원	'23.4.24.~ '25.4.23.	
9	오은주(여)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장	'23.4.24.~ '25.4.23.	
10	김호열(남)	진일회계법인 상무이사	'23.4.24.~ '25.4.23.	
11	정대진(남)	콜라보 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23.4.24.~ '25.4.23.	
12	김미림(여)	노무법인 세울 공인노무사	'23.4.24.~ '25.4.23.	
13	문유진(여)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센터장	'23.4.24.~ '25.4.23.	
14	신복자(여)	기획경제위원회	'23.4.24.~ '25.4.23.	
15	김동욱(남)	기획경제위원회	'23.4.24.~ '25.4.23.	
16	송호재(남)	경제일자리기획관	당연직	
17	강석(남)	재정기획관	당연직	

위원회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주요기능	위원수
강소기업지원 위원회 (2019)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 강소기업 종합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명
개최현황			회의결과	
참석	서면	개최일		
	○	'21.3.9. ~10.	75개 강소기업 선정 취소	
○		'21.5.13.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3개) 구성, 강소기업 지원 개선계획 보고, 강소기업 선정계획 보고	
○		'21.7.21.	서비스업 분과위원회 정량평가, 면접심사 대상 44개 기업 선정	
○		'21.7.22.	제조/건설업 분과위원회 정량평가, 면접심사 대상 14개 기업 선정	
○		'21.7.23.	정보통신업 분과위원회 정량평가, 면접심사 대상 52개 기업 선정	
○		'21.8.30.	정보통신업 분과위원회 면접심사	
○		'21.8.31.	서비스업 분과위원회 면접심사	
○		'21.9.1.	서비스업 분과위원회 면접심사, 24개 기업 선정	
○		'21.9.2.	제조/건설업 분과위원회 면접심사, 5개 기업 선정	
○		'21.9.3.	정보통신업 분과위원회 면접심사, 24개 기업 선정	
	○	'21.9.8.~10.	53개 강소기업 선정, 1개 강소기업 선정 취소	
	○	'21.12.20.~22.	26개 강소기업 선정 취소	
	○	'22.2.1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인증평가 정량평가 ◦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갱신 대상기업 의결(204건) ◦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대상기업 의결(61건) ※ 서면심의 결과 : 원안가결(전원) 	
○		'22.8.17.	정보통신업 분과위원회 정량평가, 면접심사 대상 55개 기업 선정	
○		'22.8.18.	서비스업 분과위원회 정량평가, 면접심사 대상 30개 기업 선정	

개최현황			회의결과
참석	서면	개최일	
○		'22.8.19.	제조/건설업 분과위원회 정량평가, 면접심사 대상 18개 기업 선정
○		'22.9.16.	정보통신업 분과위원회 면접심사, 최종 통과 27개 기업 선정
○		'22.9.20.	서비스업 분과위원회 면접심사, 최종 통과 15개 기업 선정
○		'22.9.21.	제조/건설업 분과위원회 면접심사, 최종 통과 9개 기업 선정
○		'22.9.27.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전체위원회 개최, 2022 서울형 강소기업 총 51개 기업 선정 의결
	○	'22.11.23.~28.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대상기업 의결(3건)
	○	'22.12.22.~26.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대상기업 의결(65건)
	○	'23.2.24.~27.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 관련 심의
	○	'23.6.27.~30.	○ 서울형 강소기업 평가운영 개선 심의 ○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대상기업 의결(16건)
○		'23.8.29.~31.	강소기업 분과위원회 정량평가, 면접심사 대상 97개 기업 선정
○		'23.9.19.~21.	강소기업 분과위원회 면접심사, 최종 통과 55개 기업 선정
○		'23.9.26.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전체위원회 개최, ○ 2023 서울형 강소기업 총 55개 기업 선정 의결 ○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대상기업 의결(4건) ※ 서면심의 결과 : 원안가결(전원)